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0년 8월 21일

나. 발 의 자: 정선희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0년 8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0. 8. 3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정선희 의원)

가. 제안이유

-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소위 ‘근로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움이 있는 바, 사실상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등 법의 사각 지대에 놓이고 있기

에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을 위한 적용대상 명시(안 제4조)
- 프리랜서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 프리랜서 활동 지원 및 특별 재정지원 사업(안 제8조~제9조)
-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 현대사회는 직업이 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다양한 직업 형태가 파생되는 반면, 법적 보호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에 의한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음.
 - 프리랜서는 특정한 소속 없이 사용자의 관리·감독 및 지시에서 자유롭게 일한다는 특성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으로 프리랜서를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함.
 - 안 제6조에서는 프리랜서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며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프리랜서의 노동환경 실태 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법률 상담 지원, 노동관계법령 교육, 복지 및 지원 시설의 설치 운영 등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 안 제9조에서는 재난의 발생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에 대하여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시 환수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본 조례안은 조직 구조의 유연화, 고용형태의 다변화의 영향으로 프리랜서 형태의 종사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안정된 근로여건이 보장되지 않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프리랜서는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근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근로여건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대금체불과 불법계약해지 등 불공정 계약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프리랜서 역시 노동자라는 인식 하에서 현행 법 체계 속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바, 본 조례안을 통해 프리랜서에 대한 법률 상담, 노동관계법령의 교육,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지원 사업은 바람직함.
- 특히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실직 등을 할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특별지원금 지원 대책도 중요함.
- 검토 결과
 - 현재 프리랜서는 법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기본적인 권익 보장이 미흡한 상황인 바, 본 조례안을 통하여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사회 보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2
----------	-----

발의년월일: 2020년 8월 일

발의자: 정선희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소위 ‘근로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움이 있는 바, 사실상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등 법의 사각 지대에 놓이고 있기에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지원을 위한 적용대상 명시 (안 제4조)
- 다. 프리랜서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
- 라. 프리랜서 활동 지원 및 특별 재정지원 사업 (안 제8조 ~ 제9조)
- 마.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 : 2020. 8. 21. ~ 8.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계약의 형식에 무관하게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 등”이라 함은 영등포구청, 영등포구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영등포구의 사무위탁기관, 영등포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및 지위 보호, 안정적인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프리랜서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업종별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4. 부당근로행위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대상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2.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
3.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특별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기준·규모, 지원내용, 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한다.

③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제8조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제9조의 특별 재정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지원을 위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